

2003.10.20(월)

檢 討 報 告 書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專門委員 林錫圭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- 2003년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
 -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
 -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·운영 계획에 따라 관련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의 승인 내역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함이며,
- 주요골자로는
 - 승인된 정원 3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혁신 계획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
- 동 조례안을 검토결과
 - 동 조례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·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의 업무 연계·협조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
 - 승인된 한시정원 3명을 두되 유효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